

의안번호	제 232 호
의결년월일	1994. 7. 1.
의결사항	광안가결

발의자	조강현 의원외 3인
제출년월일	1994. 7. 1.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의 건

수 신 : 의 장

제 목 :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의 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발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 건 1 부 끝.

발 의 자 :  (인)

(찬 성 의 원 서 명 : 붙 임 참 조)

◇ 제안 설명

- 지방화시대 개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어 자주 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지방의회는 명실공히 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게는 질높은 행정 서비스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하는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 보은군의회 1대의회 후반기를 맞아 주민들에게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의회 주관으로 집행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 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살기좋은 보은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특위구성 의원수는 6~7명 정도로 구성하며, 특위활동은 비회기중 운영하고 발굴조사대상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공공성·수익성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기 배부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 별 위 원 회 활 동 계 획

포 은 군 의 회

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을위한

특 별 위 원 회 활 동 계 획

《 목 적 》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어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살기좋은 보은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방 침 》

- ◇ 특위활동은 비회기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 ◇ 사업발굴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한다.
- ◇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대상으로 한다.
- ◇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 ◇ 집행기관에서 발굴된 자료부터 중점 검토한다.
- ◇ 활동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 세부 활동 계획 》

◇ 기 간 : 1994. 7. 10. ~ 1994. 10. 30. (3개월간)

◇ 발굴분야

- 농산물 가공분야
- 특산품 판매분야
- 편의 시설 분야 (휴양림, 산림욕장, 휴게소등)
- 위락 시설 분야 (수영장, 스케이트장등)
- 체육 시설 분야
-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분야
- 제3섹터사업 유치

◇ 발굴조사반 편성운영

- 조사총괄 : 의 장
- 조 사 반 : 분야별로 2개반 편성운영

◇ 조 사 방 법

- 2개반으로 조사반구성 운영
- 대상지 현지답사 여건 및 타당성 검토
- 시장조사를 위한 여론 수집
- 관계인 및 주민 여론 수집
- 조사표에 의한 구체적 조사로 조사의 효율성제고
- 민자유치를 위한 출향인사, 재력가등 방문협의

◇ 소 요 예 산 : 조사기간중 실제조사일에 한하여 여비지금을 한다.

《 행정 사항 》

◇ 의 회

- 활동 계획 의결 : 94. 7. 10. 이전
- 조 사 활 동 : 94. 7. 10 ~ 94. 9. 10 (2개월) ----- 현지조사
- 조사보고서작성 : 94. 9. 11 ~ 94. 9. 30 (1개월) ----- 사 무 실
- 종합분석및검토 : 94. 10. 1 ~ 94. 10. 20
- 집행 기관 통보 : 94. 10. 30

◇ 의회사무과

- 활동기간중 행 ,재정지원
- 현지수행
- 조사보고서작성및 종합분석 보조

◇ 집행기관 (군 , 읍면)

- 활동기간중 의원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자료협조 , 현지 안내등)
- 경영소득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완 분석후 군정에 반영 추진한다.
- 활동기간중 집행기관에서는 반별로 과장 1명 계장 2명이 조사반에 편성되어 함께 조사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

경영수익사업발굴 특별위원회 조사반편성

위원장	간사	조사반		조사분야	업무보조
		반별	조사의원		
조강천	우쾌명	1반	서병기 박해종 양승빈 우쾌명	편의시설분야 위락시설분야 제3색타사업 유치	사무과장 조종업
		2반	방창우 유병국 조강천 이근재	농산물가공및특산물판매 체육시설분야 국공유재산관리분야	전문위원 윤태형

경영수익사업발굴조사서

《 사업명 》

◇ 여건 및 배경

◇ 사업내용

- 위치 :

- 사업량 :

- 투자액 :

- 사업기간 :

◇ 수익전망

구분	총액	'94	향 후 계 획				
			계	'95	'96	'97	97이후 5년간
총수익							
투자액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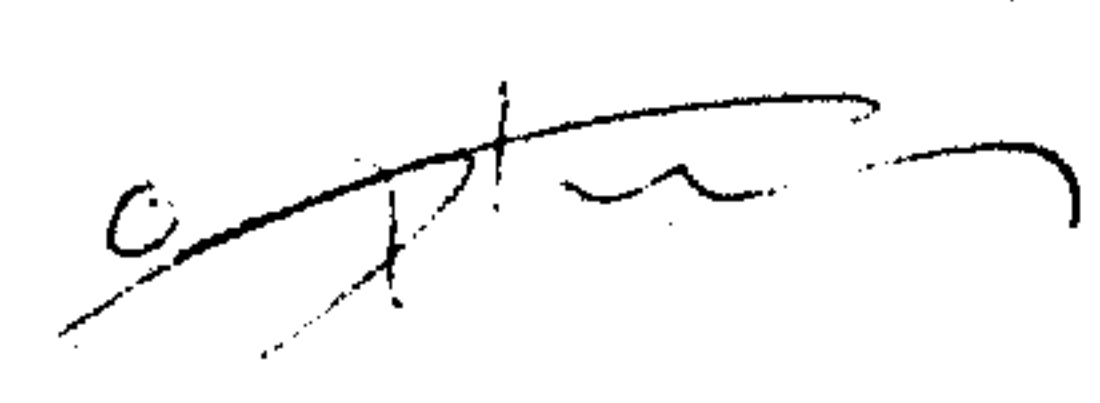

- 산 출 근 거

- 시 장 조 사

◇ 추진상 문제점

◇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의안찬성의원서명

성명	서명	(인)
양흥진		
유리병		
유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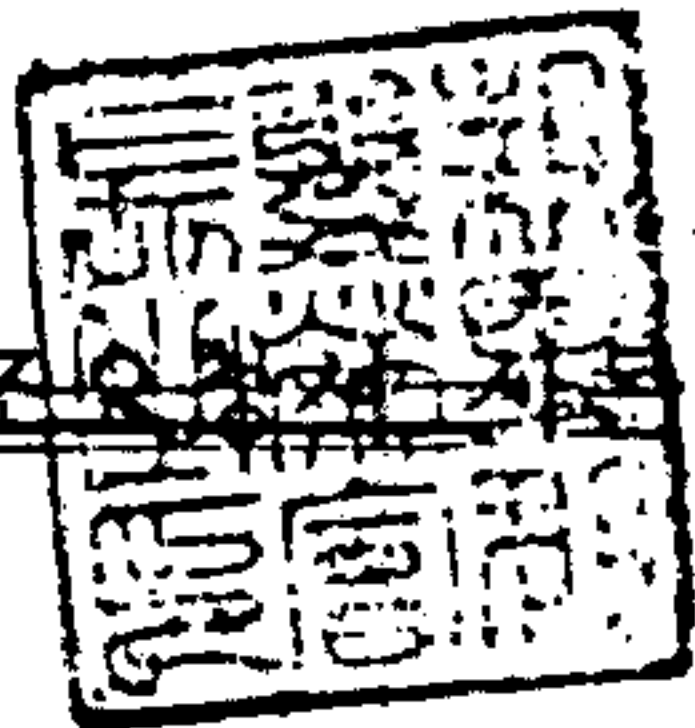
청원서

지방행정의 건실한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맞이 않습니다.

보은군 번영의 매체가 될 속리산국립공원은 천혜의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최근 삼가집단시설지구 종합개발계획이 성안되면서 민자에 의한 획기적인 시설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적 개선이 시급요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내무부 국립공원속리산 기본계획변경(안)의삼가집단시설지구 1,2,3지구 전체를 현실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은군청 기본계획변경(안)을 검토하시어 국립공원속리산의관광자원의보강과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반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자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타전이 집약되어 이상적인 속리산종합개발계획이 창출되어 성사되기를 아울러 고대합니다.

첨부 ~~국립공원협회속리산지부 청원서~~ 1 부 끝.



1994년 7월 2 일

보은군 번영회 회장 이만재




소개의원

보은군 의회 의원

박해종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삼가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확정건		
청원인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1-15번지	
	성명	이만재	주민등록번호 330330-1382117
소개의원	박해종 		
소개년월일	1994년 7월 일		

소개 의견

의견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은군 변영희 회장님이 제출한 삼가 집단시설지구 1,2,3지구 병행 개발을 원하는 청원을 소개함에 있어 보은군 지역 발전에 영구한 초석으로 기여할 낙후된 속리산 관광권은 개발하여 국제 관광화시대에 걸맞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 들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첨부참조)



(사 유)

1. 삼가호 주변의 수변경관을 이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보은관광 홍보 및 영구 재산가치를 확보할 것입니다.
2. 보은군 재정확보에 보탬이 되고 국가 세원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 0. 개발이익금 : 토지부가가치 평가액에 대한 세수 확보
(개발후 감정가 - (기초토지가 + 토목공사비)) * 1/2
 - 0. 세원확보 : 취득세 , 재산세등 지방세 확보
 - 0. 담배판매 수입
 - 0. 국세 : 법인세 , 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3.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 0. 고용효과 : 수만명 (연인원)
 - 0. 지역 특산물 개발 공급및 식료품 일용잡화 대량 판매 수익을 가져옴.
4. 우리나라 국가 농촌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관점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른 국제적 개방화 시대에 임한 우리 보은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구조를 현실적으로 발전시키려면 80%이상의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국립공원속리산을 갖고 있는 보은군으로서는 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근대화 국제화하는 것만이 영구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인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이 삼가지역 1,2,3 관광권 개발은 시급히 육성고취 및 유치해야할 사안이오니 1992년 8월 26일 본의회 의결 사안의 미진한 부분을 일소하고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 및 찬성을 부탁하면서 이로서 본위원의 소개 의견서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1994 년 7 월 2 일

보 은 군 의 회 의 원 박 해 종